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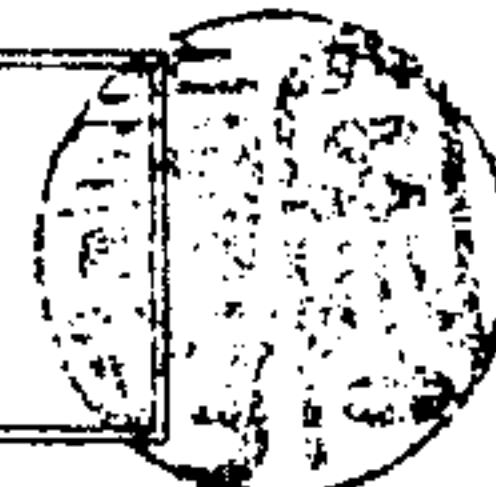
의안번호	제 230 호
의 결 년 월 일	2000년 11월 17일 제 10 / 회

의결사항
결안가결

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보 은 군 수
제 출 년 월 일	2000년 11월 2 일

기획감사실장 심사필



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②항중 “문화관광산림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③항중 “문화체육담당주사”를 “체육청소년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지급정지 및 회수) 지원금을 받았거나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학자(진학)지원금을 받는 자가 학업을 포기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학업을 계속하지 않는 경우
2. 직업훈련지원금을 받는 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훈련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
3. 자립 정착지원금을 받는 자가 자립자금을 목적외 사용하는 등 지원금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00. . .
제출자 : 보은군수
(소관부서 : 문화관광과)

1. 제안이유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 등 불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 자립지원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1. 제4조(위원회구성)중 용어정비
2. 제9조(지급정지 및 회수)기준 명시
 - ① 학자(진학)지원금 지급정지 및 회수기준 명시
 - ② 직업훈련지원금 지급정지 및 회수기준 명시
 - ③ 자립정착지원금 지급정지 및 회수기준 명시

3.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4. 근거법령

행정규제기본법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회구성) ① (생략)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u>문화관광산업과장이</u> 되며 위원은 실과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u>문화체육담당주사</u>가 된다.	제4조(위원회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u>문화관광과장</u>..... ③..... <u>체육청소년담당주사</u>.....
제9조(지급정지 및 회수) 기금을 받았거나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품행 불량이거나 지원목적외 사용등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 결정을 정지할 수 있다.	제9조(지급정지 및 회수) 지원금을 받았거나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학자(진학)지원금을 받는자가 학업을 포기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학업을 계속하지 않는 경우 2. 직업훈련지원금을 받는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훈련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 3. 자립 정착지원금을 받는 자가 지원금을 목적외 사용하는 등 지원금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이전화면] [검색화면]

법명 :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法律第5529號(政府組織法) 일부개정 1998. 02. 28.]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行政規制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規定하여 불필요한 行政規制를 廢止하고 비효율적인 行政規制의 新設을 抑制함으로써 社會·經濟活動의 自律과 創意를 촉진하여 國民의 삶의 질을 높이고 國家競爭力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行政規制"(이하 "規制"라 한다)라 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특정 行政目的을 實現하기 위하여 國民의 權利를 제한하거나 義務를 賦課하는 것으로서 法令등 또는 條例·規則에 規定되는 사항을 말한다.

2. "法令등"이라 함은 法律·大統領令·總理令·部令과 그 위임에 의하여 定하여진 告示등을 말한다.

3. "既存規制"라 함은 이 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 근거하여 規定된 規制와 이 법 施行후 이 법이 定한 節次에 따라 規定된 規制를 말한다.

4. "行政機關"이라 함은 法令등 또는 條例·規則에 의하여 行政權限을 가지는 機關과 同權限을 위임 또는 委託받은 法人·團體 또는 그 機關이나 개인을 말한다.

5. "規制影響分析"이라 함은 規制로 인하여 國民의 일상생활과 社會·經濟·行政등에 미치는 阻害影響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方法을 사용하여 미리 豫測·分析함으로써 規制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規制의 구체적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3條 (適用範圍) ①規制에 관하여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定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법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國會·法院·憲法裁判所·選舉管理委員會 및 監査院이 행하는 事務
2. 刑事·行刑 및 保安處分에 관한 事務
3. 國家安全保障, 國防, 外交, 統一, 租稅등에 관한 事務중 이 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事務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사항

③地方自治團體는 이 법이 定하는 취지에 따라 條例·規則에 規定된 規制의 登錄 및 公表, 規制의 新設 또는 強化에 대한 審査, 既存規制의 整備, 規制審査機構의 設置등에 관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제정(1986. 10. 20 조례 제 973호)
 개정(1988. 10. 20 조례 제1105호)
 개정(1988. 10. 25 조례 제1116호)
 개정(1990. 10. 8 조례 제1268호)
 개정(1990. 10. 12 조례 제1269호)
 개정(1996. 11. 18 조례 제1470호)
 개정(1997. 11. 24 조례 제1520호)
 개정(1998. 12. 10 조례 제156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 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등 불우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 등을 위하여 지원할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삭제)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관리위원회) ①기금의 조성 및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보은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산림과장이 되며 위원은 실과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지급 대상자의 선발 심사 ~~에 관한 사항~~
4. 기타 불우청소년 자립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기금관리) ①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청소년 자립기금)구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 집행은 당해년도 이자 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9편 문화관광

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④위원장은 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 출납명령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⑤기금의 출납은 보은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 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지급 대상등) ①기금의 지급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학자(진학)지원금 : 가정환경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법에 정한 중·고등학교 입학, 졸업이 어려운 청소년
2. 직업훈련지원금 :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1년 이내의 장단기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
3. 자립 정착 지원금 : 농어촌 정착의욕이 확실하고 영농사업추진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기반이 미약한 농촌 청소년

②대상자에 대한 지원 한도액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대상자 추천 및 선발) ①대상자는 읍면장이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중 기금을 지급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읍면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의결을 거쳐 추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청소년은 보은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이를 읍면장에게 통보한다.

제9조(지급정지 및 회수) 기금을 받았거나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품행 불량이거나 지원목적의 사용등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 결정을 정지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위원은 회의안전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86. 10. 20 조례 제 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10. 20 조례 제1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10. 25 조례 제1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편 문화관광

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부 칙(1990. 10. 8 조례 제1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10. 12 조례 제1269호)

이 조례는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11. 18 조례 제1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1. 24 조례 제1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2. 10 조례 제1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